

한경미래니엄 포럼



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0년 공정거래정책 방향

2010. 3. 26.



목 차

I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제도

II 2010년 공정거래정책 방향



I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제도

▶ 시장경제시스템

-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의 **가격신호**에 따라 각각 이윤의 극대화와 만족의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면 '**보이지 않는 손**(invisible hand)'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제도
- 장기적으로 시장에서의 **자유로운 경쟁**이 **혁신을 유발**함으로써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

◆ 시장경제 시스템은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한 자원배분 제도 중 가장 효율적이고 진보한 제도

◆ 오늘날 선진국들이 모두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**시장경제가 경제질서의 기본** (헌법 제119조 제1항)

I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제도

▶ 우리나라 시장경제모델

- 한국사회 특유의 쏠림과 집중현상, 우리 시장참여자들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한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가 독일이나 일본 등에 비해 훨씬 더 경쟁지향적
 -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한국형 시장경제 모델이 만들어 져야 함
- ➔ 공정위가 한국형 시장경제모델을 완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

헌법 제119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,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,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.

헌법재판소 :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·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(2001헌마132)

I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제도

▶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

❏ 일부에서 공정위가 '시장의 규제자' 혹은 '간섭자'라는 그릇된 인식

- 축구를 비유로 하면 공정위는 축구 규칙(rule)을 정하고 반칙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축구경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**심판의 역할**
- 반면, 축구단 설립제한, 축구장 건설제한, 축구관람권 발행 및 요금결정, 축구가능시간 제한 등을 하는 것은 규제기관이 하는 역할

❏ 공정위의 궁극적인 역할과 존재이유는 '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'

-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중 영합주의(Populism)적 법제도의 도입을 견제
- 카르텔, 남용행위 등 경쟁제한적인 관행과 행태를 금지
- 법무부가 **시민사회의 파수꾼**이라면 공정위는 **시장경제의 파수꾼**

Ⅱ 2010년 공정거래정책 방향

여
건

경제위기 이후
독과점구조 심화

소비자 및 중소기업
등의 부담 증가

우리기업에 대한
외국의 감시 강화

추
진
방
향

경쟁제한적 시장구조
개선 및 카르텔 근절

경제적 약자
피해 방지

외국법 준수 지도 등
국격 향상 활동 전개

시장경쟁 확산을 통해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

1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

2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질서 확립

3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

4 책임있는 소비자활동의 진작

5 국격 향상 및 미래 대비



1.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

진입규제 정비

◆ **진입규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하여 국가경쟁력을 잠식**

● (추진분야)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 중심
: 보건·의료, 금융, 유통, 에너지 분야 등

- '08년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92%(미국 24%, 일본 32%)로서 대외충격에 취약

- 우리 서비스산업의 GDP 비중은 60%(미국 77%, 일본 70%)로서 OECD 국가(30개) 중 29위

● (절차)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미국이 44%, 일본의 55% 수준
연구용역, 이해관계자 의견수렴, 관계부처 협의
→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 상정

기대효과

신규진입 확대



창업 촉진
경쟁활성화



일자리 창출
생산성 제고

1.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

규제 신설 방지

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운용 강화

- ◆ 각 부처 하위규정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여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· 개선
● '법령협의 심사지침' 제정 및 관계부처 협조 요청
 - * 2009년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법령 1,056건 중 하위규정은 66건에 불과
- ◆ 경쟁영향평가 ⇒ 금융, 통신, 운송 등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분야에 중점
중점 경쟁영향평가 : OECD의 '경쟁영향평가 툴킷'을 기초로 각 부처의 신설규제를 평가하여 경쟁제한성이 적은 대안 모색

지역시장의 경쟁촉진

- ◆ 지자체의 조례 · 규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시정
 - * 2009년에 타지역 견인대행업체 진입제한 등 847건의 조례·규칙 개선 합의

1.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

M&A 심사를 통한 독과점 방지

- ◆ 경기회복 과정에서 대형 M&A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
* 대우건설, 하이닉스, 우리금융, 대우조선해양 등 매각 예상



- ◆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하여 구조조정을 지원
- ◆ 경쟁제한성이 있는 대형 M&A에 심사역량을 집중

- 글로벌 M&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 ⇒ 소비자피해 최소화
* 국내 철광석의 65%를 공급하는 세계 2·3위 업체 (Rio Tinto, BHPB)간
- ^{M&A 사전 심사 중}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확대방안 마련
* 글로벌 스탠다드 : 미국·EU 등은 모두 사전 신고대상

- 1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
- 2 **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질서 확립**
- 3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
- 4 책임있는 소비자활동의 진작
- 5 국격 향상 및 미래 대비



2.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질서 확립

카르텔 감시 강화

- ◆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암적인 존재로 가격인상의 주요 수단
⇒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밀접 분야의 국내외 카르텔을 중점 감시

서민생활 밀접품목

- 생필품, 생계비 비중이 큰 품목
- 국제가격 대비 국내가격이 높은 수입품 등

기업활동 관련분야

- 원자재, 중간재 등 생산활동 필수 품목
- 사업자단체를 통한 기업활동 제한행위

국제카르텔

- 수입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가격동향 상시 점검
- 외국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 강화
⇒ 조사의 실효성 제고

국민생활 안정

기업활력 제고

국내 소비자 보호

2.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질서 확립

입찰담합 방지

담합 예방활동 및 감시

- 사업자 대상 설명회 등 예방 교육 실시
- 입찰공고서에 담합시 제재수단 적시를 제도화
- 중점감시반을 가동하여 담합 감시 철저

손해배상제도 개선

- 조달계약서류에 손해배상 예정액 명시(계약금액의 10~20%)
⇒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신속히 회수
- *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

입찰담합에 대한 기업의 의식과 관행을 전환하고 담합 억제 도
모

2.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질서 확립

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감시 강화

실태조사

-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등을 대상으로 실시

제도개선

- 물량몰아주기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(심사기준 개정)

지식재산권 분야의 법집행 합리화

실태조사

- 제약 · IT 등 지재권 남용가능성이 큰 분야

* 라이선스 조건으로 원재료 구입, 지재권과 무관한 상품 끼워 팔기 등

규제완화

- 대학 · 연구기관 보유기술 출자기업 : 계열사에서 제외

* 8개 대학이 8개 기술지주회사, 7개 대학 등이 9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운용 중

- 1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
- 2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질서 확립
- 3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**
- 4 책임있는 소비자활동의 진작
- 5 국격 향상 및 미래 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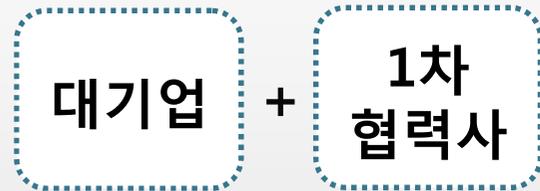


3.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

불공정하도급행위의 철저한 감시

법집행 효과 확산

- 조사대상 확대



⇒ 법집행 효과를
2·3차 협력사로 확대

- 건설업종 원사업자
를 서면실태조사대
상에 추가

거래단가·기술보호

- 일방적 단가인하,
부당감액 등 감시

- '납품단가 조정협
의
의무제' 운영
⇒('09.4.1)

- ~~핵심기술~~ ~~면역취결정~~
지

구두발주 근절

- '하도급계약 추정
제도' 시행(7.26)

- 계약문화 정착을
위한 표준하도급
계약서 보급 확대

⇒ 일방적 위탁취소
· 단가인하 등 방
지

3.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

대형 유통업체의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횡포 시정

-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,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 등 지속
- **감시** 분실상품 추가납품 강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
- **시정** 재발방지계획 제출 요구 등 법위반 업체 관리 강화

가맹점 사업자의 피해 방지

- 창업자 유인을 위한 허위·과장 정보 제공 등 감시
- 부당한 공급중단,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 시정
- 표준가맹계약을 업종별로 보급 확대

- 1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
- 2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질서 확립
- 3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
- 4 책임있는 소비자활동의 진
전
- 5 국격 향상 및 미래 대비



4. 책임있는 소비자활동의 진작

책임있는 소비자로서의 역량 강화

정보제공 강화

생필품가격정보제공시스템

- 라면, 삼겹살 등 59개 생필품의 지역별 · 유통업체별 가격정보 제공(한국소비자원 T-Gate)

허위 · 과장 광고감시

- 부동산 · 상가분양 광고 조기대응시스템 마련 (소비자모니터 활용)
- 유명인사의 기만적 추천 · 보증 광고 감시강화

* 4월 부터 80개 품목으로 확대 예

소비자 상담센터 구축

- 소비자단체, 소비자원, 자치단체를 하나의 전화번호(1372)로 연결

* 소비자 상담전화 응답율 : `09년 38.4% → `10.2월 81.3%

- 품목별 · 유형별로 모든 사례를 포괄하는 종합상담기능 수행

4. 책임있는 소비자활동의 진작

소비자 취약분야의 시장질서 확립

항공마일리지 분야

- 마일리지 이용기회 확대
 - * 마일리지 활용좌석 점유비 제고
-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개선

금융 분야

- 금융약관 심사 강화
 - :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시정
- 금융상품의 부당표시광고 시정

전자상거래 분야

- 결제대금 예치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
 - (10만원 → 5만원)
-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사기성 사이트 피해 방지

상조·다단계 분야

- 상조업 등록제 및 선수금 보전제 도입
 - * 법시행전 과도기 상황의
- 사주원 추함 관리 대책 마련 등 감시 강화
 - * 신고포상제, 업계 자율감시제, 반복 위반업체 정보공개 등

- 1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
- 2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쟁질서 확립
- 3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
- 4 책임있는 소비자활동의 진작
- 5 **국격 향상 및 미래 대비**



5. 국격 향상 및 미래 대비

국내기업의 외국경쟁법 위반 예방

필요성

- 외국 경쟁법 위반은 당해 기업은 물론 국가이미지 훼손을 초래

추진방안

- * 미국의 영대 벌금 부과액 상위 10개사 중 한국 기업이 4개(지난 5년간 약 1.7조원)
「경쟁법의 국제적 준수 행동준칙」 확산 등 예방활동 강화
- 행정지도로 인한 담합시 외국 경쟁법 적용이 면제되지 않음을 주지

개도국에 대한 경쟁법 운용경험 전수 확대

필요성

- 세계7위권 수준의 경쟁당국 위상을 국격 향상으로 연계할 필요

* 많은 개도국이 경제발전과정에서 경쟁법 제정에 서고한 한국에 큰 과시

추진방안

- 중국 당국자 연수 등 국가별 맞춤형 지원 추진
- 서울경쟁포럼 개최(9월) 등을 통해 역내 경쟁법 논의를 주도

5. 국격 향상 및 미래 대비

시장자율성 제고

필요성

- 국격 향상을 위해서는 자율적 법준수문화 정착이 필수
⇒ 경쟁 관련 「연성규범(Soft Law)」 개발 필요

대 ·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조성

- 협약체결의 수평적 확대 : 공기업, 유통업, 지방중견기업 등
- 지원효과의 수직적 확산 : 평가시 2차 협력사 지원 고려
-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: 금리 우대, 공기업 평가시 반영 등

추진방안

「모범 관행」 제정 · 보급

-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관행 실태조사
* 조사대상 : 전속거래, 리베이트 등
- 업종별 · 거래유형별 「모범 관행」 제정 및 확산 유도
*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대리점과의 전속계약은 1년 이하로 함

5. 국격 향상 및 미래 대비

녹색소비여건 조성

필요성

- 녹색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공급측면 외에 녹색소비도 중요
*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경쟁력 제고로 연계

녹색 정보 제공

- 녹색관련 중요정보제공 의무화 : CO₂ 배출량, 유기농법 등
- 녹색항목 비교정보 제공 : 유해물질 잔류량, 에너지절감효과 등
- 녹색표현 사용기준 규정 : 환경호르몬, 저탄소 등

추진방안

가정 및 학교 실천 운동

- '녹색소비 가정가꾸기 가이드라인' 마련 : 실천행동 요령 등 제공
- '녹색소비자 체험교실' 운영 :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생 대상

감사합니다

KOREA FAIR TRADE COMMISSION

